

#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구약성경번역의 문제점에 관한 일고찰

## - 개역개정판과 NIV 및 KJV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심 종 석\* · 조 현 정\*\*

### 논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과학적 시각, 곧 법학·무역학 그리고 역사학의 시각을 배경으로 성경번역상 오류 내지 부적절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당해 지적의 적정성 담보를 조건으로 새로운 용어로서 바로 잡을 수 있는 특단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이로부터 뜻밖의 장애에 기한 개연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제공에 목적을 둔 논문이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철회’는 장래에 한해서만 그 효과를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정한 이유에서 차후에 처음의 행위 시까지 소급하여 소멸케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로서 ‘취소’와 엄격히 구별된다. 따라서 ‘철회’는 ‘취소’로 개정하여야 한다(더 8:5, 8). ‘배상’은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뜻하고, ‘보상’은 적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전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상’은 ‘배상’으로 바꾸어야 한다(출 21:26, 27, 34., 레 5:16). ‘모르고’, ‘그릇’ 등의 단어는 때로 착오로 이해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일괄 ‘부지’로 바꾸어야 한다. 영문의 경우도 이와 같다(레 4, 5., 민 15, 35). ‘관세’는 ‘세금’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라 4:13, 20, 7:24). ‘무역’은 경우에 따라 ‘거래’로 사용하여야 한다(왕상 10:15, 대하 1:16, 사 23:8, 창 34:10, 21).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소유’,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성경에 표현된 단어 그대로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다(창 23:18, 왕상 10:23, 대상 27:31). ‘천지’의 표기상 ‘heaven’은 ‘heavens’로 바뀌어야 한다(창 1:1, 2:1).

주제어 : 구약성경, 사회과학적 시각, 철회, 취소, 보상, 배상, 관세, 세금, 무역, 거래, 소유, 천지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주저자, 법학박사·경영학박사·신학박사과정), cyrus@daegu.ac.kr

\*\* 계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교신저자, 경영학박사), hjc337@gw.kmu.ac.kr

## I. 들어가는 말

사전적 의미에서 ‘성경번역’은 ‘히브리어·아람어·그리스어[헬라이어] 등으로 쓰인 성경을 특정한 언어로 번역하는 일 또는 그렇게 번역된 책’을 의미한다. 주지하듯 초기 성경번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옮긴 소위 ‘70인역 성경’(septuagint, LXX, 보다 정확히는 ‘72인역 성경’)으로 이는 후일 구약성경의 공인본이 되었고 동시에 정경의 기초가 되었다. 현재 성경은 554개 언어로 그 전체가 번역되어 있고, 이 중에서 신약만의 번역은 1,333개 언어에 달하고 있다.<sup>1)</sup>

우리나라의 경우 성경번역은 각양의 특정기관 내지 기독교출판사에서 저마다의 이해에 따라 일반인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읽기 쉽게 제작한 소위 사역성경을 제외하고, 현재 약 15권의 국문 공식 번역본이 보급되어 있는데, 개신교의 경우 현재 표준 성경번역본은 1998년 발행된 ‘개역개정판’을 공식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연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 전래된 성경은 1810년 영국 해군 함장이었던 맥스웰(Maxwell, M.)이 전한 한문성서를 효시로 꼽고 있음이 통설인데, 한글번역본의 경우 1893년 조직된 ‘공선성서번역위원회’에 의해 1904년 신약이, 1911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구약 전권의 ‘성경전서’가 합본 간행되기에 이른다. 이후로도 수차례의 개역과 수정을 거쳐 1977년 신·구교의 공동작업에 의한 ‘공동번역성서’로 합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2)</sup>

그간의 성경번역은 주지하듯 ‘대한성서공회’(korean bible society)의 주도하에 끊임없이 전개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전문적인 식견과 해석의 여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차체에, 다만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수없는 우여곡절을 거쳐 왔고 지금도 이러한 상황은 다르지 않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실정은 성경번역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밖에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내지 찬송가 등의 재·개정에서도 다름이 없다고 본다.

물론 그 과정에서 히브리어나 헬라이어의 내재적 특성상 하나의 단어 또는 인칭대명사에 함축된 어의가 실로 심오하고 그 복잡성 또한 다단하여, 불가피하게 원전의 의미를 곧이곧대로 번역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그 결과 문맥상 생경한 의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번역된 국문단어 그 자체가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제각각으로 사용되거나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면 이는 실로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적시는 성경의 내용을 왜곡할 수 있거나 또는 동일한 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부터 뜻밖의 장애에 직면하게 될 개연성을 함의한다.<sup>3)</sup>

본고는 이상의 시각을 배경에 두고 특별히 법학·무역학 그리고 역사학적(또는 언어학적) 시각 등에 기초한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성경번역상 오류 내지 부적절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당해 지적의 적정성 담보를 조건으로 새로운 용어로서 바로 잡을 수 있는 특단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앞

1) 「[www.wycliffe.org.uk/wycliffe/about/vision-whatwedo.html](http://www.wycliffe.org.uk/wycliffe/about/vision-whatwedo.html)」. (2016.04.30.)

2) 한국어 성경번역에 관한 상세는 김중은(1993)을 참조.

3) 보고에 의하면, 한글 개역개정판의 경우 번역상 오류가 있는 단어나 문장이 1만여 곳, 그 중 신속히 고쳐야 할 곳만도 4천여 곳이나 되고, 심지어 개역성경에서 바르게 번역된 내용을 개악한 경우가 7백여 곳이나 된다는 보고가 있음을 참고한다(크리스천투데이, 말 많고 탈 많은 한글성경번역. 2012.5.16.).

서 언급한 대로 뜻밖의 장애에 기한 개연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제공에 본연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모름지기 본고는 사회과학적 시각에 토대를 두고 있기에, 생각건대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오류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이 때로는 연구범위 밖의 시각에서, 예컨대 성경원문과의 비교에 따른 정합성 여부를 온전히 담보할 수 없는 한계를 여하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본고는 외견상 동일한 단어가 특단의 기준 없이 무작위로 사용 또는 혼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성경원문상 본래 의미에 구애됨이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성경번역 오류에 대한 재정비를 촉구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본다. 당해 주장은 성경번역에 임하고 있거나 임하고자 하는 관계당사자의 막중한 책임에 대한 순기능적 역할과 기대를 함축한다.

요컨대 본고의 논제에서 표창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해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제시된 이러한 오류의 지적 내지 개선방안이 모쪼록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성경번역의 숭고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학술논문이기에 앞서 무릇 신앙적 출연(出捐)으로 인식되어 그 뜻이 바로 곧추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고의 구성은 우선 성경의 원전내용에 구애됨이 없이 현재 번역되어 출간된 구약성경상의 개별단어를 중심으로 이를 기술편의상 법학·무역학 그리고 역사학적 시각으로 삼분하여 개별 장에서 그 적정성을 분별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내지 개선방안의 순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경우 성경번역본은 공식본으로서 ‘개역개정판’에 주안점을 두고, 이것과 ‘NIV’(New International Version) 및 ‘KJV’(King James Version)과의 비교를 통해, 필요한 경우 ‘개역한글판’을 병합해 가면서 앞서 제시한 소기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 II. 법학의 시각

### 1. ‘철회’와 ‘취소’

에스더서(8)는 B.C.486년에서 465년까지 ‘페르시아제국’[바사]을 통치했던 ‘크세르크세스’(Xerxes I, ‘아하수어로’) 재위 시 일련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심중석, 2009), 그 내용은 당시 바사의 총리로서 하만에 의한 이스라엘의 탄압을 배경에 두고 있다.

주지하듯 당시 아하수어로는 하만에게 통치권의 상징으로서 ‘인장’(signet ring)을 대리케 하여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멸절을 위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만은 조서를 내려 제국전체에 특명을 공포한다. 그 과정에서 아하수어로는 왕비 에스더의 간언(諫言)이 이유 있다고 보아 이에 하만의 권한을 박탈하고 그에 의해 공포된 조서를 ‘철회’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은 에스더서에서 생생히 기록하고 있는데(더 3, 8:5-8), 본장의 기록에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이미 효력이 발생한 인장과 조서에 대한 권한을 다시금 ‘거두어들이다’는 의미로서 ‘철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학상 ‘철회’는 ‘아직 중국적으로 법률효과를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 의사표시를 그대로 저지하여 장래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표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설명된다. 이 경우 ‘철회’는 장래에 한해서만 그 효과를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정한 이유에서 차후에 처음의 행위 시까지 소급하여 소멸케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로서 ‘취소’와 엄격히 구별된다(심중석, 2015; Kee and Muñoz, 2009).

그렇다면 당해 기록은 문맥상 ‘철회’가 아닌 ‘취소’로 번역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가 하만에게 위임한 공무수행의 원인으로서 당해 인장에 기한 조서의 효력이 이미 바사제국 전체를 향하여 효력을 발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에스더서 본장의 기록은 ‘철회’가 아닌 ‘취소’로 번역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참고로 ‘개역한글판’에서는 ‘철회’를 배척하고 공히 ‘취소’로 사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개역개정판의 ‘철회’는, NIV의 경우 ‘*overruling*’(더 8:5)과, ‘*revoked*’로 각기 표현하고 있고(더 8:8), KJV은 ‘*reverse*’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철회’가 아닌 ‘취소’에 부합하는 용어로서 개역개정판에 견주어 일견 바른 번역이라고 본다. 다만 ‘*overruling*’과 ‘*reverse*’는 통상 법원 또는 공권력에 기한 처분의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라 할 때, 여기서 특정인, 곧 취소권자가 공권력(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아하수에로임에 비추어 사인 간 계약관계[법률관계]에서 ‘취소’로 사용되는 ‘*revocation*’에 비해 보다 적절한 표현일 수 있다고 본다. 요컨대 개역개정판의 경우 개역개정판은 개역한글판에서와 같이 ‘취소’로, NIV은 ‘*overruling*’ 또는 KJV에서와 같이 ‘*reverse*’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본다.

## 2. ‘보상’과 ‘배상’

‘배상’은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뜻하고, ‘보상’은 ‘적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전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 ‘손해배상’의 기수요건은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불법행위’ 또는 사적자치(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한 계약상 ‘계약위반 또는 불이행’(breach of contract, non-performance)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심중석, 2015; Katz, 2005), 달리 ‘손해보상’은 적법한 행위로부터 야기된, 예컨대 적법한 국가공권력의 행사로부터 야기된 경제상의 특별한 희생이나 수용으로부터 비롯된 손해의 결과로서 대가(代價)나, 계약에 따른 보험제도상의 손해의 전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보상’은 그 밖의 의미로서 ‘어떤 것에 대한 보응으로 갚는 것’ 또는 ‘남에게 진 빚 또는 받은 물건을 갚는 것’ 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빌린 돈의 보상’ · ‘노고에 대한 보상’ · ‘순종에 대한 보상’ · ‘약속에 대한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성경의 기록상 출애굽기(21, 22)는 이러한 ‘배상’과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자(21)는 ‘중에 관한 율법’ · ‘폭행에 관한 율법’ · ‘임자에 관한 책임’ 등을, 후자(22)는 ‘배상에 관한 율법’ · ‘도덕에 관한 율법’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모두

가 공히 ‘배상’의 의미로서, 곧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의 전보를 핵심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경우 ‘배상’(21:19)과 ‘보상’(21:26, 27, 34)을 무작위로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마땅히 ‘배상’으로 통일하여 번역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들 기록에서의 모든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로 보아 이러한 행위의 결과로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로 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당해 기록에서의 ‘보상’은 마땅히 ‘배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출 21:26, 27, 34). 한편 레위기 5:16도 그 처지는 마찬가지인데, 이 또한 다름없이 ‘배상’으로 번역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로 개역한글판은 ‘보상’과 ‘배상’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 손해배상의 결과[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놓아주다’·‘갚다’·‘조처하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전후 문맥상 특단의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른 한편 앞서 본 ‘보상’에 관한 그 밖의 다른 뜻, 곧 통상의 대가적 의미로 사용된 성경기록은 원안 그대로 수용해도 일질 무리가 없다고 본다(욥 17:5, 시 138:8, 잠 6:35, 22:4, 사 61:7, 겔 29:19).

개역개정판의 경우 ‘보상’(출 21)은 NIV에서 ‘compensate’(21:26, 27)와 ‘pay for the loss’(21:34)로, KJV의 경우에는 손해의 전보로서 종의 해방과 적절한 ‘배상’을 뜻하는 ‘go free’(21:26, 27) 및 ‘give money’(21:34)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문맥상 앞선 ‘compensate’에 의제(擬制)된다.<sup>4)</sup> 결국 NIV은 ‘배상’의 본래 의미와 다르지 않게 표현하고 있고, 나아가 ‘배상’(22)은 양자 공히 ‘restitution’ 또는 ‘pay, pay back’으로 표기하고 있음에 따라 이 또한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영문의 경우는 대개 그 뜻이 ‘손해배상’으로 취급할 수 있기에 무리가 없다고 보이나, 사건으로 물건의 원물반환[원상회복]이라는 시각에서는 ‘restitution’(Magnus, 2005),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손해보상의 경우에는 ‘compensate’, 그리고 실제 불법행위에 기한 사람의 상해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 그 자체로는 에스더(7:4) 및 에스라(4:22)에서와 같이 ‘damage’로, ‘손해배상액’의 경우에는 ‘damages’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Lookofsky, 2007).

그 밖에 대가적 의미로서의 ‘보상’은 어디서나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논외의 사안으로 시편 138:8의 경우 ‘보상’이라는 번역은 ‘성취’로 번역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개역개정판의 ‘보상’은 NIV의 경우 ‘fulfill’로, KJV의 경우 ‘perfect’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성취’가 보다 올바른 표현일 것임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성경원문의 비교가 요구된다. 참고로 개역한글판에서는 “완전케 하실지라”라는 표현으로 ‘성취’에 의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3. ‘보증’과 ‘담보’

‘보증’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채무자를 두어서 주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행위 또는 제도’로 설명된다. 이 경

4) ‘의제’라는 단어는 법률용어로서 통상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를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로 풀이된다. 이하 사용되는 ‘의제’는 이와 다름이 없다.

우 ‘보증’은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하나로, 이를테면 보증인으로서 제3자로 하여금 동일한 채무의 내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은 채무를 일련의 보증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자를 지칭한다(최준선, 2009). 따라서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주종관계[부종성]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주종관계는 ‘보증’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이는 소위 인적담보제도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반하여 ‘담보’는 통상 ‘특정한 재산에 의한 채권의 확보수단’을 의미하는데, 대개 ‘담보’는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한 인적담보에 대립하는 의미로, 곧 물적담보로 사용된다. 예컨대 저당권(抵當權)이나 질권(質權)이 대표적인 물적담보의 대상이 된다(김준호, 2011).

양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선 인적담보의 경우 혹여 보증인이 자력을 잃거나 상실하게 되면 그 가치가 소멸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만, 이에 반하여 물적담보는 당해 물건의 가치가 유지되는 한 이것에 의해 채권의 목적을 여하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시각에서는 인적담보에 비하여 훨씬 유리한 수단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요컨대 보증인의 재산이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불충분하다든지 또는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고의로 자신의 재산 등을 처분하여 이를 감소케 하는 경우라면, 이때의 ‘보증’은 채권의 확보차원에서 그만큼 불안정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채권담보제도로써 담보가치는 물적담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증’은 ‘인적담보의 경우’, 달리 ‘담보’는 ‘물적담보의 경우’가 통상이라 할 때, 양자는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함이 마땅하다.

구약성경의 경우 ‘보증’(시 119:122, 잠 6:1, 11:15, 17:18, 20:16, 22:26, 27:13) 또는 ‘담보’(창 38:17-20, 43:9, 44:32, 욥 17:3, 잠 6:1)로 번역된 기록은 널리 산재해 있는데, 특이할 것으로 잠언(6:1)에서는 ‘보증’과 ‘담보’를 동시에 엮어보고 있기도 하다. 참고로 ‘담보’의 경우 개역한글판에서는 ‘약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은 눈여겨 볼만하다.

여기서 ‘담보’에 관한 구약성경의 기록 중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 당시에는 사람의 경우에도 물적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창 43:9, 44:32). 이를 고려하면 위의 기록에서 엮어보고 있는 ‘보증’과 ‘담보’라는 표현은 공히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다만 문제시 되는 번역은 NIV와 KJV에서의 처지이다.

우선 NIV에서는 ‘보증’을 시편(119:122)에서 ‘ensure’로, 그 밖의 경우에는 ‘security’로 번역하고 있고, ‘담보’는 ‘pledge’(창 43:9, 44:32, 욥 17:3, 잠 6:1)와 ‘guarantee’(창 43, 44) 등으로 각기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다른 한편 KJV에서는 ‘보증’을 일괄하여 ‘surety’로 번역하고는 있으나, 다만 ‘담보’는 ‘pledge’(창 38)를 제외하고, NIV와는 다르게 ‘surety’(창 43-44, 욥 17:3)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개역개정판에 서와 같이 ‘담보’를 ‘보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결과라 보이는데, 생각건대 그 이유는 이를 인적담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증’으로 해석한 결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앞서 본 대로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사람 또한 물적담보가 될 수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는 번역상의 오류라 보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상에서 번역된 각양의 단어의 적정성을 제시하기에, 우선 ‘security’와 ‘surety’는 통상 빚에 대

한 보증으로서, 곧 물적담보의 의미로서 사용됨이 통례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담보’로, 달리 ‘guarantee’는 계약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을 대신하게 하는 인적담보의 경우로 그 쓰임새를 특정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앞선 것과 구별하여 ‘보증’으로 번역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한편 ‘pledge’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3자 또는 그 밖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예컨대 ‘저당’을 잡히거나 ‘담보’를 맡길 경우로 특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록으로서 ‘저당물’을 신명기(24) 및 에스겔(18)에서 각각 ‘pledge’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예시할 수 있다.

#### 4. ‘선의’와 ‘착오’

사법상 ‘선의’라고 함은 어떠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며, ‘악의’(또는 ‘고의’)란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학상 ‘선의’와 ‘악의’의 개념은 윤리상의 그것과는 전혀 관계됨이 없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알고’[知] 또는 ‘모르고’[不知] 있는 심리상태, 곧 내심의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는바 이는 유의하여야 한다(심종석, 2015). 이러한 ‘선의’에 관하여 개역개정판은 ‘부지’, NIV은 ‘unintentionally’, KJV은 ‘ignorance’로 표현하고 있는데, 각각의 단어는 레위기(4, 5) 그리고 민수기(15, 35)에서 그 대부분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분별하여 참고하여야 할 단어는 ‘착오’(error, mistake)라 할 수 있는데, ‘착오’는 ‘표의자가 내심의 의사와 표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행한 의사표시’로 설명된다. 이러한 착오는 ‘사실이나 법에 관한 오인’으로서 통상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에 상당한 기록으로 레위기(5:4)의 기록을 예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착오’는 통념상 대개 ‘실수’ 또는 ‘과실’에 의체된다(심종석, 2015; Kramer, 1999).

구약성경의 경우 ‘선의’는 ‘부지’와 동일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본대로 ‘unintentionally’ 및 ‘ignorance’와 일관성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레위기(4:2)에서와 같이 ‘부지’ 대신에 ‘그릇’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KJV은 신명기(4:42)와 여호수아(20:3)에서 ‘unawares’와, ‘unwittingly’로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수 20:5). 또한 에스겔(45:20)에서는 ‘부지’가 아닌 ‘모르고’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한데, 이를 KJV은 ‘ereth’(err, error)로 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IV는 일관되게 ‘unintentionally’을 사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다만 NIV의 경우 에스겔의 기록에서만 유일하게 ‘unintentionally’와 ‘ignorance’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 기록은 전후문맥상 여하히 ‘선의’와 동일한 뜻을 표창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특단의 문제점 내지 흠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일관성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공히 개역개정판의 경우에는 ‘부지’로, NIV의 경우 ‘unintentionally’로, KJV의 경우 ‘ignorance’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다만 ‘착오’에 해당하는 유일한 표현으로서 KJV의 ‘ereth’(err, error)와 ‘모르고’ 및 ‘unintentionally’은 논외의 사안으로 히브리어 원전에 기초한 표기상의 명확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 Ⅲ. 무역학의 시각

#### 1. ‘관세’와 ‘조세’

‘관세’란 일반적으로 ‘일국의 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목적은 대개 내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두고 있다. 넓은 의미로 ‘관세’는 수출 또는 증계무역의 일환으로서 일국의 ‘법역’(legal territory)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것도 포함된다(심중석, 2009).

구약시대 무역은 민족 간 물품의 교환 또는 매매에 국한되었는데, 이 경우 현대적 의미에 부합하는 ‘관세’ 본래의 의미는 여하히 찾아볼 수는 없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관세’로 취급할 수 있는 ‘통과세’에 관한 ‘고대 메소포타미아’(ancient mesopotamia)의 관습은 오로지 신명기 2장에서만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sup>5)</sup>

그런데 성경에서 ‘관세’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의 경우 총 3번 언급되고 있는데(라 4:13-20, 7:24), 이들 기록에서는 예외 없이 ‘조공’·‘관세’·‘통행세’로 각각 번역하고 있다. 달리 NIV에서는 순서대로 ‘tribute’·‘duty’·‘taxes’로, KJV에서는 ‘tribute’·‘custom’·‘toll’로 표현하고 있다. 이 경우 ‘조공’에 상응하는 ‘tribute’와 ‘통행세’에 해당하는 ‘toll’과 ‘duty’의 번역에 관해서는 그런대로 이견이 없으나, ‘taxes’와 ‘custom’을 공히 ‘관세’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물론 KJV에서와 같이 ‘custom’을 원뜻과 같이 ‘관세’로 번역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나, 이 또한 그것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함에 있어 적합한 표현인지를 고려할 때, 그 결과는 매한가지라 할 수 있다.

요컨대 국문의 경우 ‘관세’와 KJV의 경우 ‘custom’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시대적 상황에 걸맞지 않다고 보아, 이를 NIV의 영문표기 그대로 ‘세금’ 또는 이민족에게 부과하였던 각양의 세금으로서(삼상 17:25, 대하 24:6-9), 예컨대 ‘조세’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경우 ‘세금’은 내국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 그 구분의 실익이 모호하다고 할 때, 가급적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광의적 의미로 이른바 ‘조세’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 2. ‘무역’과 ‘거래’

본래 ‘무역’이라는 단어는 고대 중국의 고전인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와 ‘증선지(曾先之)의 ‘고금역대십팔사략(古今歷代十八史略)에 나오는 ‘이물상무역(以物相貿易)과 ‘무역의복회전수주(貿易衣服回傳數周라)는 문구에서 유래한 것을 효시로 보고 있음이 정설인데, 이 경우 ‘무역’은 ‘교역’과 동일시되어 공히 ‘매매’ 또는 ‘교환’을 포함한다. ‘무역’에 대한 정의는 실로 다양하나

5) ‘고대 오리엔트’(ancient orient) 내지 ‘고대 메소포타미아’(ancient mesopotamia)의 지리적 폭과 범위, 그리고 이하 성경에서의 민족별 지명표기에 관한 상세는 심중석(2011)을 참조.

일괄하면 ‘이국 간 · 상인 간 · 상거래’(異國間商人間商去來)로 함축할 수 있다(심중석, 2009).

여기서 ‘무역’은 묵시적 담보요건으로서 ‘사회적 타당성’ · ‘실현가능성’ · ‘법적 안정성’ 등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는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의 판단에 비추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principle of good faith, 또는 ‘신의칙’)을 기저에 두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심중석, 2015).

구약성경의 경우 ‘무역’은 총 14번 언급되고 있는데, 특이할 것은 ‘무역’ 그 자체를 당시 페니키아[블레셋]의 ‘도시국가’(city state)로서 ‘두로’ · ‘시돈’ 등 하나님께 대적한 멸망의 대상으로서, 곧 이방인의 정체성으로 일체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심중석, 2013). 이는 에스겔에서 ‘두로가 받을 심판’(26), ‘두로에 대한 애가’(27), ‘두로왕이 받을 심판 · 시돈이 받을 심판’(28) 및 이사야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23) 등에서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애굽’이나 ‘구스’ 그리고 ‘아라비아’ 등도 그 처지는 블레셋과 마찬가지라 볼 수 있다(왕상 10:15, 대하 1:16, 9:14, 사 23:8, 23:18, 45:14).

구약성경의 경우 이러한 ‘무역’은 NIV의 경우 ‘trade’로, KJV의 경우에는 ‘traffick’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traffick’는 사전적 의미에서 ‘악덕상인’ · ‘밀입국을 주선하는 전문가’ · ‘부정거래업자’ · ‘마약거래상’ 등과 같이 부정적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음이 통례인데, 이는 앞서 본대로 성경의 시각과 KJV의 시각이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개역개정판에서의 ‘무역’과 NIV에서의 ‘trade’는 본연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아 성경의 기록에 함축된 의미를 바로 새겨 ‘거래’ 또는 ‘traffick’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KJV에서는 개역개정판의 ‘무역’을 ‘traffick’으로 표현하고 있음과 동시에 ‘거래’라는 표현을 또 다시 ‘trade’로 재차 사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겔 27). 이는 재론의 여지 없는 번역상의 흠결로 보아 마땅하다고 본다.

이상을 종합할 때, 개역개정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역’은 일괄하여 ‘거래’로, NIV의 ‘trade’는 ‘traffick’으로, KJV의 ‘trade’는 룻기 4:7에서와 같이 ‘transaction’으로 번역함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이 경우 KJV의 ‘trade’는 때때로 ‘거래’ 또는 ‘매매’(창 34:10-21)라고도 사용되고 있기도 하나, 성경전체로 보아 특단의 장애가 없음을 조건으로 나아가 보편적 · 통일적 시각에서 위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 3. ‘언약’과 ‘계약’

무역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영문계약서의 명칭은 당해 분야의 관습과 관행에 따라 통상적으로 ‘agreement’와 ‘contract’가 주로 사용된다(최준선, 2009). 그렇지만 이러한 개별용어는 ‘법적 구속력’(legal enforcement)의 확보차원에서 경우에 따라 당초 의도했던 법률효과의 발생에 특단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agreement’는 ‘복수 이상의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 내지 상호 합의의 표시’를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법상 소위 ‘합의’에 해당한다(심중석, 2015). 따라서 이러한 ‘합의’로서 ‘agreement’는 상

호 권리와 의무의 병존에 기한 대가관계(對價關係)가 성립하지 않은 합의 또는 그 결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예컨대 ‘약속’에 준하는 ‘합의’까지도 망라한다.

달리 ‘contract’는 우리법상 ‘계약’과 동일한 의미로서, 곧 서로 대립하는 복수 이상의 당사자 의사표시의 합치라는 시각에서 ‘agreement’와 동일하나, 당사자 일방이 합의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타방은 법적 구속력에 기하여 이행강제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일정한 ‘구제수단’(remedies)을 행사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 경우 당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자격’ · ‘목적’ · ‘계약내용’ 그리고 ‘대가관계에 있어 상호 의무’ 등의 요건이 명확히 갖추어지고 또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결국 앞선 ‘contract’는 그 성립요건이 매우 엄격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효과로서 법적 구속력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의사표시의 합치만을 의미하는 ‘agreement’와 명확히 구분된다(Solan, 2007).

구약성경의 경우 이러한 ‘계약’과 ‘합의’에 해당하는 용어로서는 ‘contract’와 ‘agreement’를 위시하여 ‘covenant’ · ‘treaty’ · ‘consent’ · ‘vow’ · ‘obligate’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사용된 횟수는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실로 다양하고도 방대하다. 그렇지만 주목할 수 있는 논점은 개역개정판, NIV 및 KJV 공히 특별한 기준 없이 동일한 단어를 무작위로 혼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나 개역개정판의 경우에는 ‘계약’ · ‘언약’ · ‘맹약’ · ‘서약’ · ‘서원’ 등을 혼용하고 있는바 그 처지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생각건대 히브리어 원문에서 표기된 개별단어의 다중적 함의가 당해 기록의 문맥상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앞서 지적한 바대로 뜻밖의 장애에 직면할 수 있는 장애에 우선할 수 없다는 시각에 반론이 없다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명료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최소한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견해를 피력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양의 단어가 실로 그 본연의 뜻과 무관하게 다중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별단어 본래의 뜻과 취지를 끝이끝대로 살려 이를 천편일률적으로 켜다 맞추는 것은 무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확정하여야 할 사실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관계가 중시되거나 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언약’(covenant)으로, 이스라엘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을 부각하여 ‘계약’(contract)으로, 이민족 내지 열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앞선 계약[합의]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계약’[agreement] 내지 여호수아 9장에서와 같이 ‘조약’(treaty)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Fins, 1999).

그 밖에 구약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서원’(vow)은 이에 함축된 의미가 남다르다고 보아 원안대로 존치해 두고, 그 밖에 모두는 공히 이상의 내용에 준하여 개별단어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4. ‘소유’와 ‘재산’

‘소유권’(property, ownership)은 물건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것으로서 ‘목적물[물건]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 권리’로 설명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지배는 법률의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반하여 ‘점유권’(possession)은 ‘목적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는데, 여기서 ‘사실상의 지배’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는 객관성에 근거한다(심종석, 2015).

결국 ‘소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점유권’은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권리로서 각기 특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권’과 ‘점유권’이 결합될 경우 ‘점유권’은 ‘소유권’에 일체 대항하지 못한다.

구약성경의 경우 ‘possession’은 일상의 의미와도 같이 통상 ‘소유’로 번역되고 있는데, 달리 ‘property’는 ‘재산’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례로 창세기(23:18)를 포함하여 다수의 곳에서 ‘소유’를 NIV는 ‘property’로, KJV은 ‘possession’으로 표기하고 있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창세기 13:6에서와 같이 NIV는 ‘possession’으로, KJV은 ‘substance’·‘inherit’(창 15:7)·‘riches’(창 36:7)·‘goods’(창 46:6)·‘treasure’(시 135:4) 등과 같이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개역개정판은 창세기(46:6)의 ‘재물’을 제외하고는 공히 ‘소유’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으로, NIV와 KJV에서 공히 사용된 ‘possession’이 국문의 경우 ‘기업’으로 번역되고 있다는 점(창 17:8), NIV의 경우 열왕기상(10:23)에서 (솔로몬 왕의) 재산(riches)이 동일한 의미로서 역대상(27:31)에서 (다윗의) 재산(property)으로 번역되어 있고, 같은 장과 절에서 KJV은 각각 ‘riches’와 ‘substance’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개역개정판은 공히 ‘재산’으로 통일하고 있다.

여기서 부각할 수 있는 논점은 구약성경 원전의 태도여부에 관계없이 이상의 개별용어의 쓰임새와 특성을 고려할 때, 이것이 특별한 기준에 의해 선별되어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구심에 있다. 물론 ‘재물’·‘소유’·‘재산’·‘기업’ 등의 용어가 형편과 처지에 따라 부득불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문번역과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지 않고 제각각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논점에 힘을 신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또한 특단의 기준에 의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사건으로 이룰테면 ‘재물’·‘소유’·‘재산’·‘기업’ 어느 것 하나라도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당시 저들이나 지금 우리에게 잠시 맡겨 놓으신 것이라는 시각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들 모두는 점유의 본래적 의미를 감안하여 ‘possession’으로 특정하고, 달리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경우에 놓여 있다면, ‘riches’·‘substance’·‘property’ 등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통일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극히 제한된 용어로의 선별이 요구된다고 본다.

## 5. ‘무름’과 ‘교환’

사전적 의미로 보아 ‘무르다’라는 뜻은 상행위에 있어 ‘사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의 입자에게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는 행위’로 설명된다. 한편 ‘교환’은 ‘서로 바꾸거나 주고받고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법학적 시각에서 ‘교환’은 ‘양당사자가 금전 및 그 밖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지원림, 2004).

룻기 4:7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합법적 거래관습으로서 무르거나 교환하는 행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이러한 행위를 확정하기 위한 표증으로서 통상 무르는 자가 자신의 신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거래관습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개역개정판의 경우 ‘무르다’와 ‘교환’이라는 표현은 NIV에서 ‘redemption’과 ‘transfer of property’로, KJV에서는 ‘redeeming’과 ‘changing’으로 번역하고 있다. 전후기록을 살필 경우 ‘redemption’(redeem)은 이른바 ‘채권양도’(assignment of right) 또는 ‘채무이전’(transfer of obligation)에 의제할 수 있는 단어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인데, 일례로 이는 신약에서 ‘구원’·‘구속’·‘구함’의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값을 대신하여 속량(續良)하시다”라는 뜻을 담은, 소위 ‘대속’(代贖, redemption)과 동일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당해 기록에서 ‘무르다’라는 의미는 전후문맥에 비추어 법률상 소위 ‘대위변제’(subrogation)와 유사한 뜻을 지니고 있다고 볼 것인바, 이 경우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권자의 채권이 그 어느 한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으로 설명된다(심종석, 2015).

결국 당해 기록에서 ‘무르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번역으로 보아, 이를테면 ‘대위변제’의 시각에서 ‘대신 갚다’·‘상환하다’ 등의 용어로 치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성경내용의 가독성 제고 및 정경적 권위를 고려하여 보다 순화된 표현으로서, 이를테면 ‘되갚다’의 표현도 고려해 봄직 할 것이다.

성경전체에 걸쳐 ‘무르다’라는 표현은 레위기에서 13번(25, 27) 룻기에서 4번(3, 4) 등 총 17번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 레위기는 “이미 행한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돌리다”라는 의미로서, 이를테면 ‘취소’와 ‘상환하다’(레위기에서는 ‘속량’)의 뜻을 동시에 표창하고 있고, 룻기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곧 나오미에 대한 보아스의 ‘대위변제’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레위기는 ‘취소하다’ 또는 ‘상환하다’로, 룻기는 ‘되갚다’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곧 NIV와 KJV에서는 이상의 모두를 공히 ‘redeem’으로 표현하고 있음에 비추어, 룻기를 제외하고 레위기의 경우 ‘취소’는 앞선 ‘overruling, reverse’ 또는 경우에 따라 ‘revocation’에 준하는 단어로, ‘상환하다’는 ‘redeem’ 또는 ‘recourse’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본다.

다른 한편 ‘교환’은 외견상 원문 그대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문제시되는 점은 NIV의 경우 이를 ‘transfer of property’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곧이곧대로 직역하면 ‘소유권[또는 재산권]의 이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바, 이는 전혀 그 뜻이 생소한 뜻밖의 용어로 보아 KJV에서와 같이 일괄하여 ‘changing’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생각된다.

## IV. 역사학의 시각

### 1. ‘종’과 ‘노예’

구약성경의 경우를 포함하여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다양한 법전을 참고할 때, 당시 ‘종’ 또는 ‘노예’는, 예컨대 로마제국의 노예처럼 가혹한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아닌, 다만 신분상 최하위 계층으로서 취급되고 있는 차별적 특징이 있다. 나아가 이들 대부분은 그들 의사에 반하여 ‘전쟁에 의해 포로로 사로잡힌 자’로 취급되었고, 그밖에도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채무 때문에 ‘스스로 몸을 판 자’·‘부모가 팔아버린 자식’·‘고아’·‘유괴된 자’들도 있었다(조의설, 1976).

구약성경의 기록상 이들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이스라엘, 곧 선민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었는데(왕상 8:41-43, 대하 6:32-33, 사 56:6-7), 이 경우 ‘일정한 조건’이라 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회심에 기한 ‘이방인의 결단’에 핵심을 두고 있다. 생각건대 후자의 경우 이방인으로서 룻의 결단(룻 1:16, 7)이 모범일 것이라 본다(성명옥, 2012; 정중호·심종석, 2016).

이 경우 구약성경에서 ‘노예’는 총 8번 언급되고 있는데(창 43:18, 44:16, 왕상 9:21-22, 대하 8:9, 28:10, 36:20, 라 9:9), NIV은 이를 ‘slave’로, KJV은 ‘bondmen’(bondservice, bondwomen)으로 표기하고 있다. 다만 창세기(44:16)와 역대하(36:20)에서는 공히 ‘servant’로, 역대하(8:9)에서는 각각 ‘slave’와 ‘servant’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종’이라는 단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slave’와 ‘servant’ 외에도, ‘handmaid’(창 30:1-6), ‘officials’(출 8), ‘maidservants’(삼상 8:16, 느 7:67), ‘young men’(창 22) 등 그 수효도 부지기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논점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비추어 ‘주의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은 개역개정판이나 NIV, KJV 공히 ‘your (thy) servant’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눈외로 이러한 처지는 신약성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행전 4:25, 딤후 2:24).

그렇다면 외견상 ‘servant’ 및 이에 준하는 용어는 앞선 ‘slave’, ‘bondmen’(bondservice, bondwomen)에 비하여 ‘배타적 지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비추어 ‘수용적 지위’를 내재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여기서 ‘수용적 지위’라고 함은 이를테면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배타적 지위’로서 이방인[노예]의 시각에서가 아닌, 선민 또는 ‘일정한 조건’이 전제된 이스라엘[종]로 편입되거나 될 수 있는 친화적 대상임을 함의한다.

만약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면 국문의 경우 ‘종’과 ‘노예’의 구분은 물론이고, 영문에 있어서도 ‘slave’(노예)와 ‘servant’(종)은 마땅히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작위로 혼용되고 있는 ‘종’과 ‘노예’에 대한 명확하고도 분별 있는 구분의 당위와 그 촉구를 시사한다.

## 2. ‘놋’과 ‘철’

‘놋’은 ‘아연과 구리의 합금’으로서 엄밀하게는 ‘황동’(brass)을 말한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청동’(bronze)과의 구분 없이 일괄하여 ‘놋’, ‘놋쇠’, ‘구리’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처지는 KJV의 경우 ‘brass’, NIV의 경우 ‘bronze’라는 표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참고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역사적으로 ‘청동’은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가나안에 전파되었고, ‘놋쇠’는 왕국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다(Finkelstein, 1998).

한편 특질상 ‘놋’은 쉽게 부식되고 무르다는 단점이 있으나, 그럼에도 ‘장식품 · 번제단 · 물두멍 · 성막 등의 도구’(출 27:2-3, 30:18), ‘나팔 · 제금 등의 악기’(대상 15:19), ‘투구 · 단창 · 방패 등과 같은 무기’(삼상 17:5-6, 삼하 21:16, 대하 12:10), ‘놋문 · 거울 · 그릇 등 건축과 생활용품’(출 38:8, 왕상 4:13, 시 107:16, 겔 27:13), ‘화폐’(출 25:3)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특히 ‘놋’은 솔로몬의 성전건축 때 요긴하게 사용되었고, 그 양도 매우 풍성했다고 전한다(왕상 7, 대하 4).

다른 한편 성경의 기록상 ‘철’은 앞선 ‘놋’과 같이 창세기(4:22)에서 처음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곧 두발가인이 최초로 ‘쇠’를 다룬 인물이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그런데 사무엘상(13:19-23)의 기록에서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기의 날 · 삽 · 도끼 · 쟁이 · 쇠스랑 · 쇠채찍 등을 보수하려면 적국 블레셋으로 가서 수리하여야 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사울과 요나단 이외에 이스라엘은 철제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다. 나아가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행여 철제련 기술을 습득할까 두려워했다고도 전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시 되는 논점은 ‘철’ 또는 ‘쇠’라는 의미로 NIV와 KJV에서 공히 사용하고 있는 ‘iron’이라는 단어가 당해 사무엘상 이전의 기록에서 무려 20번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두발가인의 철’(창 4:22), ‘하나님께서 비유로 언급하신 철’(레 26:19, 신 8:9, 28:23, 33:25), ‘이방인 소유의 철’(신 3:11, 4:20, 28:48, 수 17:16 및 18, 사 1:19, 4:3-13), ‘적으로부터 노획한 철’(수 6:19-24, 22:8) 등은 특단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민수기(35:16)에서의 ‘철 연장’, 신명기(27:5) 및 여호수아(8:31)에서의 ‘쇠 연장’의 경우에는 의문의 여지가 존재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로서 ‘쇠 연장’은 그 쓰임새가 여호와와 제단을 다듬을 때에 한하여 사용되었다면, 이는 적국으로부터 탈취하여 여호와와 곁간에 들인 것으로 보아 그 특단의 용도 내지 희귀성에 있어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나(수 6:24), 민수기(35:16)의 당해 기록은 이른바 ‘도피성’(cities of refuge)에 관한 기록으로서 이 경우 ‘철 연장’(NIV에서 ‘iron object’, KJV에서 ‘instrument of iron’)은 단어 그 자체가 함축하고 있는 뉘앙스로 보아 당시 ‘철 연장’이 이스라엘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는 성경번역상 원문과의 철저한 해석이 요구된다.

## 3. ‘하늘’과 ‘하늘들’

주지하듯 구약성경의 첫 구절은 천지창조의 기록으로서, 그 내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天

地)를 창조하시니라”이다. 이 경우 ‘천지’는 ‘하늘과 땅’으로서 통념상 그 의미를 달리 볼 여지가 없을 것이나, 다만 그 기록에 있어 ‘천’(天)을 KJV은 ‘the heaven’으로, NIV은 ‘the heavens’으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살피기에 고유명사로서 ‘heaven’은 대개 정관사 ‘the’ 없이 관용적으로 ‘천국’·‘천당’·‘하늘나라’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달리 ‘heavens’는 이를 포함하여, 예컨대 “오 하나님”과 같이 감탄사로 쓰이고 있음이 상례이다. 그런데 ‘천’을 표현하고 있는 구약성경의 기록에서 눈여겨 볼 것은 KJV의 경우 창세기(1:1)에서의 ‘heaven’이 동일한 의미로서 ‘heavens’로 바뀌어 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창 2:1). 이러한 KJV의 처지는 처음과는 달리 이후에도 줄곧 ‘heavens’로 표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NIV은 ‘heavens’로 일관성을 견지하고 있다.

한결음 더 나아가 NIV 및 KJV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있어 일관되게 ‘God of heaven’으로 특정하여 사용하고 있음은 눈여겨 볼만한 하다(창 24:3-7, 라 1:2, 6:9, 느 1:4-5, 단 2:37). 논외의 사안으로 이는 신약성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계 11:13, 16:11).

생각건대 이 경우 ‘heavens’는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수 고유명사’ 내지 ‘감탄사’로 취급하는 것보다, 모름지기 성경에 있어서는 ‘복수 보통명사’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하늘’과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또는 ‘천국’]은 공히 태초에 창조의 객체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곧 사람창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또 하나의 하늘로서 ‘천국’을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이를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예비하셨다는 의미로 새길 수 있다.

이러한 용어의 구분된 사용은 성경원전에 의한 특단의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엡 1:3-6)는 기록을 참고할 경우 당해 논점은 일견 타당성을 견지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앞서 본대로 우리가 보는 이 땅 위의 ‘하늘’(heaven)과 ‘천국’(heaven)을 병합한 ‘복수 보통명사’로서 ‘하늘들’(heavens)로 특정하여야 함과 동시에 이를 마땅히 구별하여 사용해야 할 것임을 함의한다. 다만 개역개정판의 경우 ‘천지’는 당해 단어의 유구성에 비추어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각은 신앙적 차원에서 여하히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4. ‘나팔’의 표기

구약성경에서의 ‘나팔’은 크게 3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쵸츠라’(chatzotzerah)로 명명되고 있는데, 개역개정판에서는 원안 그대로 ‘나팔’, NIV와 KJV에서는 공히 이를 ‘trumpet’ 또는 ‘trumpet of (hammered) silver’으로 번역하고 있다(신 10). 이것은 주로 종교적 행사 그리고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쵸츠라’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악기 중에서 ‘하나님 명령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악기’라는 지위를 점한다. 이른바 ‘여호와와 악기’라고 칭하고 있음은 이 때문이다. 환언하면 ‘하쵸츠라’는 민수기의 기록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는 방법과 연주 및 사용방법 그리고 연주자까지 일일이

정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하쵸츠라’는 이후로 솔로몬 때까지 제사장들에 의해서 연주되었다.

본장에 비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2개의 ‘은나팔’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소집하거나, 진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며,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월삭 때,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서 이것을 불도록 명하시고 계심을 볼 수 있다. 또한 ‘하쵸츠라’는 언약궤의 1차 운반 때는 물론, 2차 운반 때에도 7명의 제사장이 불었고 언약궤 안치식 이후 조직된 찬양대에서는 2명의 제사장이 ‘하쵸츠라’를 담당하였다.

이스라엘 건국 이후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는 통상 2개 이상의 ‘하쵸츠라’를 사용하였으며, 가장 많았을 때는 120개의 ‘하쵸츠라’가 사용되기도 하였다(대하 5:12-13). 또한 다윗시대(대하 29:26-28)와 바벨론 포로귀환 이후에서도 사용되었고(스 3:10), 포로귀환 이후 성전의 성벽 낙헌제 때는 7명의 제사장들이 ‘하쵸츠라’를 연주하기도 하였다(느 12:35-41). 그 밖에도 ‘하쵸츠라’는 다윗의 노래 시편에서도 엿보이고 있고(시 98:6), 북이스라엘 12대왕 요아스 즉위식에도 쓰였을 뿐만 아니라(왕하 11:12-14), 선지자 호세아는 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고의 소리로도 사용하였다(호 5:8).

다른 하나는 ‘쇼파르’(shopfar)이다. NIV은 ‘trumpet’, KJV은 ‘trumpet of rams' horn’, 개역개정판은 ‘나팔’ · ‘양각나팔’ · ‘양각’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 ‘쇼파르’는 성경의 나팔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나팔로서 군사적 · 종교적 행사를 비롯하여 백성들을 회집할 때 사용되었다.

‘쇼파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이삭을 대신한 숫양을 기리는 뜻을 담아, 숫양의 길고 끝이 말려 올라간 뿔만을 사용하여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사용한 ‘쇼파르’는 특별한 취급이 없어 그 음역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곧 ‘쇼파르’는 그 크기와 구멍의 구조에 따라 음높이가 좌우되었던 까닭에, 주로 전쟁이나 행진 등을 위한 신호용 나팔로 사용되었다. 그 밖에도 ‘쇼파르’는 예배나 각종 절기나 축일예배의 신호용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신성한 악기로 취급되어 예배시작 전에, 때로는 성전의 분위기를 생기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그 밖의 다른 악기와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다. ‘쇼파르’가 예배에 사용된 것은 다양한 기록에서 살필 수 있다(삼하 6:15, 왕상 1:34-41, 대상 25, 대하 15:14).

마지막으로 ‘케렌’(keren)이다. 구약성경은 ‘은 나팔’ 또는 ‘뿔’로 표기되는데, NIV에서는 ‘ram's horn’ · ‘trumpet’ · ‘cornet’ 등으로 번역하고 있다(레 23:24, 수 6:4-13, 단 3:5-15). ‘케렌’은 소의 뿔로 만든 것으로 ‘쇼파르’와 비슷한데, 기록에 비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안식일에 이것을 불어서 기념하라고 명하고 계시며(레 23:23-24), 때로는 ‘케렌’과 ‘쇼파르’ 모두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수 6:5). 또한 ‘케렌’은 신년, 곧 ‘요벨의 날’(year of jubilee, holy year) 에도 사용되었다. 참고로 신약에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나팔은 모두가 ‘케렌’에 해당한다.

특히 구약성경에서 ‘하쵸츠라’와 ‘쇼파르’는 대부분 함께 나타나며, 두 악기는 연주용보다는 신호용으로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이들의 차이점은, ‘하쵸츠라’ 음정이 ‘쇼파르’에 비해 높다는 점, 그 음색 또한 더욱 예리하고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난다는 점 등이다. 또한 ‘쇼파르’는 각종 축제나 절기용 · 전쟁용 · 신호용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나, ‘하쵸츠라’는 주로 예배전용으로

사용된 특징이 있다. 이 경우 ‘쇼파르’는 제사장·레위인·사사·군인 등 폭넓은 계층이 사용하였으나, ‘하쵸츠라’는 오직 제사장만이 사용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심중석, 2015; 이성실, 2002).

그렇다면 이상의 ‘나팔’은 ‘하쵸츠라’의 경우 ‘은나팔’과 ‘trumpet of silver’로, ‘쇼파르’는 ‘양각나팔’과 ‘trumpet of rams' horn’으로, ‘케렌’의 경우 ‘빨나팔’과 ‘cornet’으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구분은 특별히 ‘하쵸츠라’가 역대하 7:6에서와 같이 ‘여호와와의 악기’(LORD'S musical instruments)로서 다른 것과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에 기인한다.

## 5. ‘이방인’과 ‘외국인’

사전적 의미에서 ‘이방인’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영어로 ‘이방인’은 통상 ‘stranger’, ‘alien’ 또는 ‘foreigner’ 등으로 표현되는데, 이 경우 ‘alien’은 간혹 적대감을 내재한 뜻으로 다른 것과 그 차별성을 부각한다. 특이할 것은 구약성경의 경우 통상 NIV은 ‘alien’을, KJV은 ‘stranger’를 그 밖의 것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약성경에서 ‘이방인’은 통상 ‘게르’(gēr, 신 29:22)와 ‘노크리’(nākrī, 신 14:21)로 혼용되고 있는데(Mark, 2012; Mayshar, 2014; Prior, 2012; Zehnder, 2015; 정중호, 2004), 양자는 공히 ‘자신의 본래 고향을 떠나 온 외지인’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공통점을 지닌다. 다만 전자는 ‘이주민’을, 후자는 ‘외국인’을 특정범위에 두고 있다는 점, 나아가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함축된 의미상 ‘사회적 약자’라는 의미를 보다 중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그 차이로 꼽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나그네와 떠돌이’(창 23:4, 레 25:35-47)라는 의미의 ‘토샤브’(tōšāb)를 비롯하여 ‘게르’와 유사한 ‘게르 베토샤브’(gēr wetōšāb)라는 조합된 단어로도 곧잘 표현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간혹 ‘자르’(zār)라는 용어 또한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이상의 뜻과 ‘후견인이 없는 이방인’의 의미를 합체하여 일컬을 때 주로 사용된다(라이너 캐슬러, 2014; 정중호·심중석, 2016).

이상과 같은 ‘이방인’은 히브리어 성경번역에 따라 기록상 그 의미가 다종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다만 원어의 뜻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방인’에 대한 표현상 일부 그 흡결이 엿보인다. 곧 개역개정판에서 ‘이방인’에 의체되어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이라는 표현은 총 7번 나타나고 있는데(창 31:15, 출 21:8, 레 22:25, 삼하 1:13, 렘 51:51, 겔 14:7, 읍 1:11), 이 경우 ‘외국인’을, NIV은 ‘foreigner’, KJV은 ‘strangers’로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신약의 경우도 이와 다름이 없다(행전 17:21).

그런데 NIV의 경우 사무엘하와 에스겔에서만 유독 ‘alien’을, KJV은 오바다에서 뜻밖에도 ‘foreigner’를 사용하고 있다. 국문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외국인’으로 특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이러한 이유는 개역개정판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에 의체된 단어, 이를테면 ‘이방인’·‘이방’·‘이방인’·‘이방사람’·‘이방민족’·‘거류민’·‘동거인’·‘객’·‘나그네’를 포함하여 앞서 본 ‘게르’·‘노크리’·‘토샤브’·‘게르 베토샤브’·‘자르’ 등 개별단어에 담긴 본원적 의미의 해석차로부터 야기된 결과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같이 사용되고 있는 ‘foreigner’·‘strangers’·‘alien’ 등이 그 표현에 있어 제각각이라면 이는 이러한 추정을 부인할 수

있기에 충분할 것이라 본다.

설령 앞서 본 바대로 히브리어 원문상의 개별단어에 함축된 의미가 제아무리 난해하고 심오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번역함에 있어 특단의 기준 없이 무작위로 혼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적에 여하한의 반론이 무색할 것으로 본다. 다만 여기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본 연구범위 밖에 있다고 할 때, 모쪼록 이 같은 지적이 성경해석에 관한 유관분야에서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V. 나가는 말

모름지기 성경을 정확 ·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이를 저마다의 신앙고백에 두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된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성경이 그 번역과정에서 원전과는 달리 그 뜻을 잘못 해석하고 있거나 왜곡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중차대하고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물론 서로 다른 언어에서 비롯된 극복할 수 없는 장애 내지 한계에 직면하여 그 올곧은 뜻과 의미를 여하히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되레 그것을 동일한 단어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용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단어를 동일한 뜻으로 취급하거나 그 밖에 단어 본연의 뜻을 도외시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반론의 여지없이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일임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 기독교 신앙을 왜곡할 수 있는 극단의 처사로 보아 마땅할 것이다.

살피기에 히브리어 성경을 기초로 70인의 헬라역에서 비롯된 구약성경원전은 현재 우리의 경우 그 중물로서 국 · 영문을 포함하여 약 30여개의 성경으로 번역 · 출간되어 있는 상황인데, 만약 본 연구결과를 긍정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실로 중대하고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본 연구결과가 설득력을 갖기에 충분하고 또한 그것이 올바르고도 틀림없는 지적이라 가정할 때,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본 연구는 그 토대를 사회과학적 시각에 두고 있기에 혹여 그 밖의 시각이 본 연구결과에 병합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폭과 범위가 가일층 넓고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릇 성경번역은 특정한 관계당사자의 임의처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결단코 곤란하다. 왜냐하면 성경번역은 신학은 두말할 것도 없고 역사학 · 철학 · 문학 · 과학 · 언어학 · 법학 · 사회학 · 인류학 · 무역학 등 유관학문분야의 통섭적인 시각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올바른 성경번역에 만전을 기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사회과학적 시각에 기초하여 접근된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가 함의하고 있는 추상같은 사실로서, 성경번역에 있어 유관분야의 통섭적 시각이 여하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날로 침체되어 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작금의 기독교계를 향한 자성적 결단을 촉구로도 볼 수 있을 것인바 이에 본 연구가 성경번역분야에 있어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어쨌거나 본 연구결과에 담긴 함의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중에 이러한 촉구와 기대가 오늘날 기독교계가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바람과 기도에 부응하여 적어도 성경번역 분야에 있어 잔잔한 반향이 될 수 있기를, 나아가 성경번역분야에 임한 크리스천의 숭고하고도 막중한 책무에 붙어 놓여진 ‘숨’(창 2:7, 겔 37:5, 요 20:22)을 다시금 깨달아 바로 볼 수 있는 신앙적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한다.

## 참고문헌

- 김준호, (2011). 민법강의. 법문사, 471-472.
- 김중은, (1993). 한국어 성경 번역의 역사. 기독교사상, 37(2), 23-33.
- 라이너 캐슬러, (2014). 히브리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약논단, 20(1), 12-30.
- 성명옥, (2012). 선한 영향력(룻기 01:16-17). 한국여성신학, 74, 89-96.
- 심중석, (201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의 해석과 적용. 삼영사, 25, 30-31, 51, 82-83, 184-185, 213, 221-222, 338.
- \_\_\_\_\_, (2013). 무역과 전쟁, 그 공존의 역사. 삼영사, 48-51.
- \_\_\_\_\_, (2009). 무역상무론. 우용출판사, 75-83.
- \_\_\_\_\_, (2009). 무역학의 정체성 및 연구방향 재정립을 위한 비판적 검토. 경영교육논총, 54, 199-200.
- \_\_\_\_\_, (2009). 스스로 계신 이의 약속. 삼지원, 641-645.
- \_\_\_\_\_, (2011). 앗수르의 역사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계획과 현 시대를 향하신 계시적 함의. 로고스경영연구, 9(1), 64.
- \_\_\_\_\_, (2009). 페르시아 아케메니아 왕조의 세계경영사적 의의. 로고스경영연구, 7(2), 43.
- 이성실, (2002). 구약의 악기에 대한 소고와 우리말 번역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11, 95-97.
- 정중호, (2004).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게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3(1), 512-513.
- \_\_\_\_\_, 심중석, (2016). 다문화 사회의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교의적 고찰. 로고스경영연구, 14(1), 2-3, 7.
- 조의실, (1976). A History of the World, 정한출판사, 129-134.
- 지원림, (2004). 민법강의. 홍문사, 1128-1129.
- 최준선, (2009). 국제거래법. 삼영사, 31, 85.
- 크리스천투데이, (2012.5.16). 말 많고 탈 많은 한글성경번역.
- Finkelstein, I. (1998). Bible Archaeology or Archaeology of Palestine in the Iron Age? A Rejoinder. *Levant*, 30(1), 167-174.
- Fins, J. J. (1999). Commentary: from Contract to Covenant in Advance Care Planning. *The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27(1), 46-51.
- Katz, A. W. (2005).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CISG. *International Review of Law*

- and Economics*, 25(3), 378-396.
- Kee, C. and Muñoz, E. In Defence of the CISG. *Deakin L. Rev.*, 14, 99.
- Kramer, E. A. (1999). Contractual Validity According to the UNIDROIT Principles. *Eur., JL Reform*, 1, 269.
- Lookofsky, J. M. (2007). Consequential Damages in CISG Context. *Pace Int'l L. Rev.*, 19, 63.
- Magnus, U. (2005). Remedy of Avoidance of Contract under CISG - General Remarks and Special Cases, *The JL. & Com.*, 25, 423.
- Mark, A. A. (2012). *He Loves the Immigrant: Deuteronomy's Theological and Social Vision for the גר*,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Biblical Studies*. Asbury Theological Seminary, Abstract.
- Mayshar, J. (2014). Who Was the *Toshav*?.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33(2), 225, 1-9.
- Prior, J. (2012). I Departed Full, and the Lord has Brought Me Home Empty(Ruth 1: 21): A Transforming Word from Failed Migrants. *East Asian Pastoral Review*, 49(4), 394-407.
- Solan, L. M. (2007). Contract as Agreement. *Notre Dame Law Rev.*, 83, 353.
- Zehnder, M. (2015). Achenbach, Reinhard/Albertz, Rainer/Wöhrle, Jakob (Hg): The Foreigner and the Law. *Orientalistische Literaturzeitung*, 110(1), 19-24.

#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구약성경번역의 문제점에 관한 일고찰

## - 개역개정판과 NIV 및 KJV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심 종 석 · 조 현 정

토론자 남서울대 한영희

### 개요설명

본 연구는 사회과학적 다각적 시각, 곧 법학적 시각 · 무역학적 시각 그리고 역사학적 시각을 배경으로 성경번역상 각 분야별 해석상 오류 내지 부적절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당해 지적의 적정성 담보를 조건으로 새로운 용어로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을 성경귀절을 예를 들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각분야별로 인식하는 좋은 단초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고 참신한 논문으로 생각됩니다..

### 주된 주장내용

‘철회’는 장래에 한해서만 그 효과를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정한 이유에서 차후에 처음의 행위 시까지 소급하여 소멸케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로서 ‘취소’와 엄격히 구별된다. 따라서 ‘철회’는 ‘취소’로 개정하여야 한다(더 8:5, 8).

‘배상’은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뜻하고, ‘보상’은 적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전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상’은 ‘배상’으로 바꾸어야 한다(출 21:26, 27, 34., 레 5:16).

‘보증’ (시 119:122, 잠 6:1, 11:15, 17:18, 20:16, 22:26, 27:13) 또는 ‘담보’ (창 38:17-20, 43:9, 44:32, 욥 17:3, 잠 6:1)로 번역된 기록은 널리 산재해 있는데, 특이할 것으로 잠언(6:1)에서는 ‘보증’ 과 ‘담보’ 를 동시에 엮어보고 있기도 하다. 이는 개역개정판에서와 같이 ‘담보’ 를 ‘보증’ 으로 해석하고 있는 결과라 보이는데, 생각건대 그 이유는 이를 인적담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증’ 으로 해석한 결과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앞서 본 대로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사람 또한 물적담보가 될 수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는 번역상의 오류라 보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관세’ 와 KJV의 경우 ‘custom’ 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시대적 상황에 걸맞지 않다고 보아, 이를 NIV의 영문표기 그대로 ‘세금’ 또는 이민족에게 부과하였던 각양의 세금으로서(삼상 17:25, 대하 24:6-9), 예컨대 ‘조세’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 경우 ‘세금’ 은 내국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 그 구분의 실익이 모호하다고 할 때, 가급적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광의적 의미로 이른바 ‘세금’ 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관세’는 ‘조세’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라 4:13, 20, 7:24). ‘무역’은 경우에 따라 ‘거래’로 사용하여야 한다(왕상 10:15, 대하 1:16, 사 23:8, 창 34:10, 21).

#### 질문내용

1. 목회자의 세금부과 문제 등 여러 사회적인 합의문제 도출 뿐만아니라 흔히 회자되는 하느님과 하늘님 그리고 하나님 용어의 통일 문제도 합의는 물론 무엇이 올바른 명칭인가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발표자님은 어떤 명칭이 올바른 명칭인가 아니면 다른 적절한 명칭은 무엇인지 피력해주시길 바랍니다.
2. 역사학적인 측면은 신학의 전문분야에서 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고 어느 정도 합의된 일치가 되었으리라 생각하지만, 법적인 용어, 무역학적인 용어의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법적·무역학적 학문적 용어의 통일이 해석상 오류와 부적절성을 차단하는 선결수단이자 기본적인 수단임에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틀림없다. 그래서 원문의 이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의 편협한 해석을 넘어 해석상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통섭하는 측면의 용어 적용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발표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